

## **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**(제44조의23제9항 관련)

### 1.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

- 가. 지정검역시행장 내 소독 및 작업일지를 비치해야 한다.
- 나. 검역관리인이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역시설 및 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.
- 다.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지정검역물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고, 지정검역물이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라. 지정검역시행장 출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해야 한다.
- 마. 검역이 종료되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지정검역시행장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.
- 바. 별지 제40호의14서식의 지정검역물 관리일지를 1년간 비치해야 한다.

### 2. 검역관리인의 준수사항

- 가. 지정검역물을 지정검역시행장에 입출고할 때 품명(학명), 입고 당시 상태, 검역 결과, 폐사체 처리 결과 등을 별지 제40호의14서식의 지정검역물 관리일지에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- 나. 지정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별지 제40호의15서식에 따른 수입화물(검역)표를 선하증권단위로 부착해야 한다.
- 다.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  - 1) 지정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·장비 등의 청결유지, 소독·살충 등
  - 2) 지정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이동
  - 3) 야생동물질병의 감염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방역상 필요한 조치
  - 4) 검역 기간 중 폐사한 동물의 처리
- 라. 지정검역물이 입고되기 전에 1회 이상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 및 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동물검역 및 방역(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포함한다)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